#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박찬대·조오섭·조승래

한준호 · 김남국 · 김승남

송기헌 · 김주영 · 고영인

홍정민 · 김철민 · 김정호

문진석・양향자・아수진비

허중식 • 박 정 • 허 영

민홍철 · 이동주 · 김승워

이수진 · 오영환 · 장경태

이용선 · 이형석 · 정태호

의원(27인)

## 제안이유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 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 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 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1조).
-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 (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 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마.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 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되,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2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 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위치
- 4. 교육목표
- 5. 학칙
- 6. 경비와 유지방법
-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8. 교직원 배치계획서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대 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 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 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 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 ·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 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 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대안교육기관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

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할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급식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은 그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 회계로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학력인정 등) 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감은 학력인정 사실이 기재된 등록증을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교육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 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 2. 대안교육 현장지원
  - 3. 대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소속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 제16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안교육기관의 헌장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17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 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

- 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회계운용) ①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 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교원의 자격)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

- ·해임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있다.
-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명칭)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4항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이미 재학 중이거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편입학한 학생 등이 졸업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